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 경제안보 Review

## 경제안보 분석

북극항로의 구조적 제약요인 분석 :  
러시아 북동항로(NSR)를 중심으로

## 경제안보 현안

EU-중국 무역·경제안보 갈등 심화 동향과 함의

## 경제안보 현안

중국 상무부 美 제재 이행 금지 명령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EWS 공급망 / 에너지 동향

- 러·중 정상회담, 다극질서 구축과 전략적 협력 강화 재확인
- 인도네시아, 핵심 원자재(팜유·석탄·니켈 등) 수출 국가통제 강화 추진
- EU, 대중 전략 재검토 본격화 - 중국은 무역제한 조치에 보복 경고
- 미국-멕시코, 캐나다 제외한 USMCA 개정 양자협상 개시



온라인 다운로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경제안보 Review - 메일링 서비스 신청

[cesfa@mofa.go.kr](mailto:cesfa@mofa.go.kr)

## I. 경제안보 분석

정선미 선임전문관

### 북극항로의 구조적 제약요인 분석 : 러시아 북동항로(NSR)를 중심으로 01

1. 북극항로 개요
2. 러시아의 북동항로 통항권 통제
3. 러시아 NSR의 경제성
4. 함의 및 시사점

## II. 경제안보 현안

임산호 선임전문관

### EU-중국 무역·경제안보 갈등 심화 동향과 합의 10

1. 최근 EU-중국 관계 동향
2. EU의 대중국 경제안보 대응 강화 배경과 주요 논의 사안
3. 관련 합의

## III. 경제안보 현안

김단비 전문관

### 중국 상무부 美 제재 이행 금지 명령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6

1. 주요 내용
2. 중국 내 평가
3. 미국 내 평가
4. 시사점

## IV. EWS 공급망 / 에너지 동향

- 러·중 정상회담, 다극질서 구축과 전략적 협력 강화 재확인 21
- 인도네시아, 핵심 원자재(팜유·석탄·니켈 등) 수출 국가통제 강화 추진
- EU, 대중 전략 재검토 본격화 — 중국은 무역제한 조치에 보복 경고
- 미국-멕시코, 캐나다 제외한 USMCA 개정 양자협상 개시

# 북극항로의 구조적 제약요인 분석 :러시아 북동항로(NSR)를 중심으로

정선미 선임전문관

## 요약

-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 해빙 감소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확대로 북극항로(NWP·TSR·NSR)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북동항로(NSR)는 현재 유일하게 의미 있는 상업 운항이 이루어지는 항로로 평가

  - ▶ 북동항로는 수에즈 운하 대비 운항 거리 단축이 가능하며, 최근 홍해 사태 및 호르무즈 해협 위기 등으로 공급망 다변화 차원의 관심이 확대
  - ▶ 2025년 기준 NSR 통과 운항은 103회, 화물 물동량은 약 320만 톤을 기록하는 등 상업 활용도가 증가 추세
- 러시아는 2012년 NSR을 국가 전략 수송로로 지정하고 법·제도 정비를 통해 통항권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 러시아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234조를 근거로 통항 허가, 도선 의무, 쇄빙선 지원, 군함 사전 승인 제도 등을 운영하며 NSR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강화
  - ▶ 미국과 EU는 이를 과도한 해양 관할권 행사로 평가하며 항행의 자유 및 국제법 질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국내 법제도와 헌법상 국내법 우선 원칙을 근거로 기존 입장을 유지
- NSR은 높은 운항 비용과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글로벌 컨테이너 물류의 대체 항로로 발전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며, 경제성 또한 원유·LNG 등 액체 벌크 화물 운송에 주로 국한

  - ▶ 북극 해역 특유의 결빙 환경, 쇄빙선 의존, 높은 보험료 및 제한된 인프라 등으로 운항 비용 부담이 높으며, 낮은 수심과 좁은 항로 폭으로 초대형 컨테이너선 운항이 어려워 규모의 경제 확보에 제약 존재
  - ▶ 반면 LNG·원유 등 액체 벌크 화물은 항행거리 단축에 따른 운항비 절감 효과로 수에즈 운하 대비 비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
- 경제안보 관점에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보완적 항로로 NSR에 접근할 필요

  - ▶ 러시아의 법·제도 변화, 국제 제재 환경, 북극 거버넌스 및 지정학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 특정 국가 또는 특정 항로에 대한 의존도를 확대하기보다 공급망 다변화 및 다중 경로(Multi-route)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1. 북극항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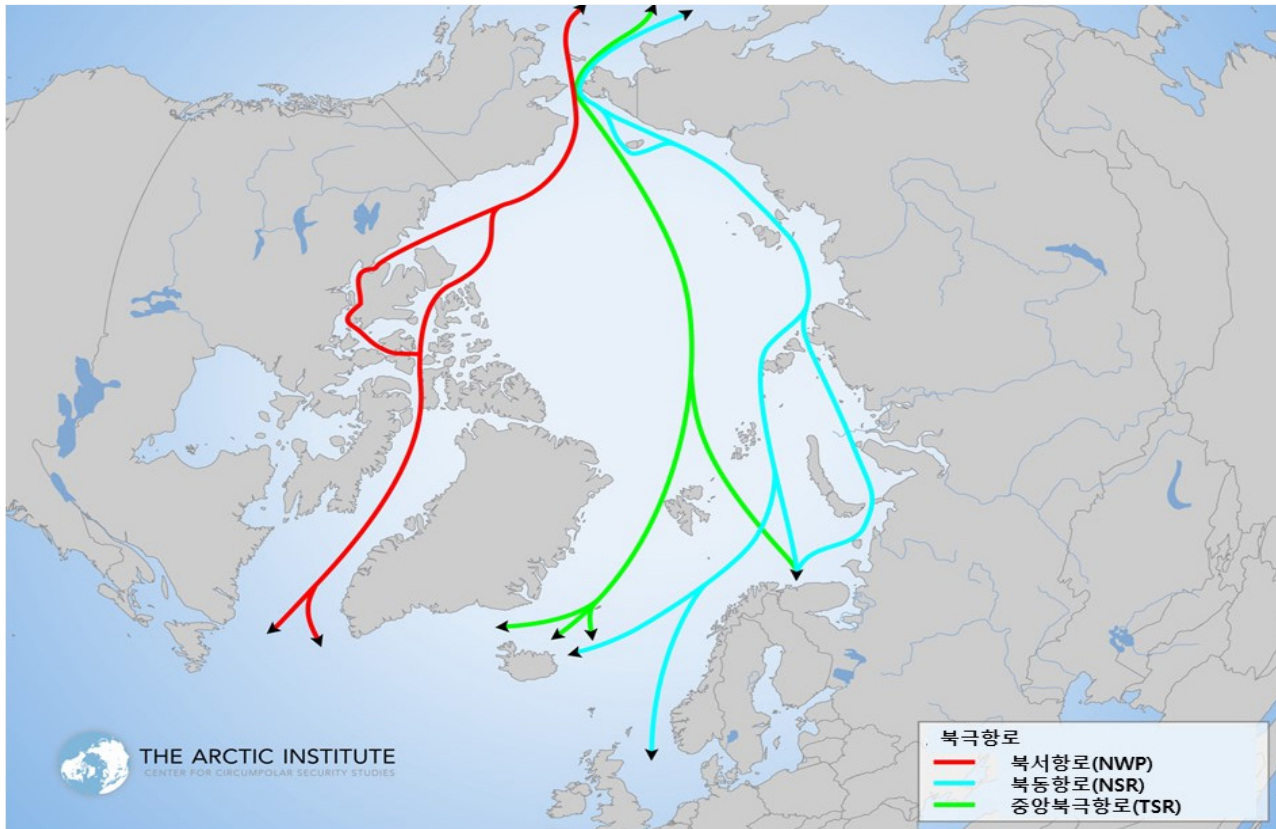
### ■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경유하여 유럽과 아시아·북미를 연결하는 해상 운송 경로로,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 대비 운항 거리 및 기간 단축 가능성과 해상교통로 다변화 수요 확대에 따라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

- ▶ 북극항로는 기존 수에즈 운하 경유 항로 대비 유럽~동북아 간 운항 거리를 약 30~40% 단축할 수 있어 연료비·운항기간 절감 측면에서 전략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
- ▶ 특히,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북극 해빙 감소와 러시아의 북극 개발 정책 추진을 배경으로 북극항로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위기와 홍해 사태 등 주요 해상교통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대안 항로로서 북극항로의 전략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음

### ■ 북극 해상 항로에는 ▲북서항로(NWP) ▲중앙북극항로(TSR) ▲북동항로(NSR) 등 3가지 항로가 존재하며, 항로별 지리적 조건·경제성·상업 운항 수준에는 차이 존재

- ▶ 북서항로(North-West Passage, NWP)는 캐나다 북부 군도를 통과하는 항로로, 얕은 수심·복잡한 해협 구조·계절적 결빙 등으로 인해 대형 상업선의 안정적 운항에 한계 존재
  - NWP는 7개의 주요 항로로 구성되며, 항로별 수심이 상이하여 대형 상업선의 범용적 활용에 구조적 한계 존재
    - ※ 2025년 NWP 운항 시기는 약 2개월(8.6~10.14)
- ▶ 중앙북극항로(Transpolar Sea Route, TSR)는 북극해 중앙 공해를 횡단하여 대서양과 태평양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항로로 수심이 상대적으로 깊으나, 해빙·극한 기상환경·인프라 부재 등으로 인해 현재 단계에서는 실질적 상업 운항이 제한적
  - TSR은 대부분의 항행 시즌 동안 다년빙(multi-year ice)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쇄빙선·항만·수색구조(SAR) 체계 등 지원 인프라가 부족하여 안정적 상업 운항에 구조적 제약 존재
- ▶ 북동항로(NSR)는 러시아 북부 연안을 따라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항로로, 북극항로 가운데 가장 활발한 상업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러시아의 통항 통제·계절적 해빙 변화 등으로 인해 안정적 운항에 제약 존재
  - ※ 2025년 NSR 운항 시기는 약 4개월(6.30~11.17)
  - NSR은 러시아가 쇄빙선·항만·LNG 개발 등 관련 인프라를 집중하여 구축하며 상업 운항을 확대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의 낮은 수심과 좁은 항로 폭으로 인해 흘수·선폭 제한 및 러시아의 통항 허가·도선·쇄빙선 의무 등 제약 존재
    - ※ 흘수는 선박이 물 위에 떠 있을 때 선체가 가라앉는 깊이를 뜻하며, 선폭은 배의 가장 넓은 폭을 의미

## [북극항로 노선도]



자료: The Arctic Institute

### ■ 현재 북극항로의 상업 운송은 NSR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NWP와 TSR은 제한적인 운항 실적을 보이고 있음

- ▶ NSR은 러시아의 쇄빙선·항만·LNG 인프라 확대를 기반으로 북극항로 가운데 가장 활발한 상업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화물 물동량 및 통과 운항 횟수도 증가 추세
  - 2025년 NSR 통과 운항(transit voyage)은 약 103회를 기록하며 전년(97회) 대비 증가하였고, 화물 물동량은 약 320만 톤에 달하는 등 북극항로 중 가장 높은 상업 활용도를 보였으며, 운항의 대부분 러시아와 중국 항구 간 항해가 차지
- ▶ NWP는 최근 완전 통항(full transit)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운항 규모는 아직 크지 않아 대규모 상업 운송 항로로 활용되기에는 한계 존재
  - 2025년 NWP 완전 통항 사례는 총 16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크루즈선이 1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화물선 5건, 유조선 1건 운항에 그쳐 대규모 상업 운송 항로로 활용되기에는 한계 존재
- ▶ TSR은 북극해 중앙 공해를 횡단하는 최단거리 항로로 주목받고 있으나, 다년빙(multi-year ice)과 극한 기상환경 등으로 인해 현재 단계에서는 실질적 상업 운항 사례가 제한적인 수준
  - ※ TSR은 현재 쇄빙선급 선박 중심으로만 제한적 항행이 가능한 미래 항로로, 2012년 중국 쇄빙선 쉘룽(雪龍, Xue Long)이 북극해 고위도 항로를 항해한 사례가 있으나 현재까지 정기적 상업 운항 실적은 부재

## 2. 러시아의 북동항로 통항권 통제

### ■ NSR은 현재 북극항로의 상업 운송을 주도하는 핵심 항로로, 러시아는 이를 국가 전략 수송로로 지정하여 관리·통제하고 있음

- ▶ 러시아는 2012년 NSR을 ‘러시아 연방의 역사적 국가 수송로’로 규정하고,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제234조의 결빙수역 조항을 근거로 항행 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연안국 규제 권한을 근거로 통항 허가, 도선, 쇄빙선 지원 등 항행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 UNCLOS 제234조(결빙해역 조항)는 가혹한 기후와 결빙으로 인해 항행 위험이 높고 해양오염 발생 시 심각한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결빙해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연안국이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법령을 제정·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음

- ▶ 러시아는 2017년 12월 29일 「상선법」 제4조 개정을 통해 NSR 수역에서 선적되는 원유, 천연가스, 액화천연가스(LNG), 석탄의 해상 운송을 원칙적으로 러시아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어 2018년 연방법 제525-Φ3를 통해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Rosatom)을 북동항로의 단일 운영자로 지정하고 관련 권한을 집중시키는 등 NSR 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북동항로에 대한 국가 통제력을 강화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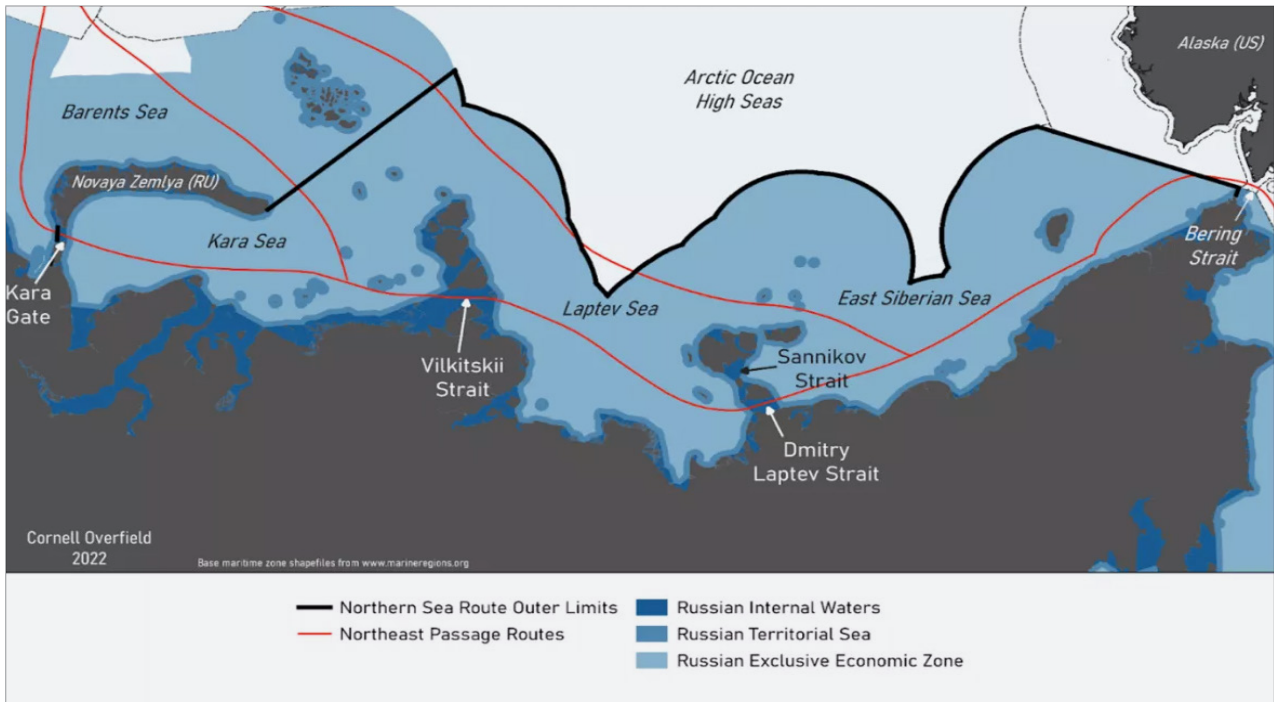
- ▶ 2020년 「북동항로 해역 항행규칙」을 제정하여 NSR 통항 허가제, 선박의 위치·항로·빙상 정보 보고 의무, 빙상도선 및 쇄빙선 호위 제도를 규정하였으며, 로사톰 산하 해양작전본부(Штаб морских операций)가 선박 운항을 통합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북동항로에 대한 국가 통제체계를 구체화하였음
- ▶ 2022년 「러시아 연방 내해·영해·접속수역에 관한 연방법」을 연속 개정하며 외국 선박의 러시아 항행규칙 준수 의무를 명문화하고, 외국 군함 및 정부 소유 선박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북동항로에 대한 국가 관리·통제 권한을 강화하였음

### ■ 러시아의 북동항로 통제 강화에 대해 미국과 EU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UNCLOS 제234조와 국내 법제도를 근거로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 미국은 러시아가 NSR에서 UNCLOS상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규제 권한을 주장하며, 외국 선박에 과도한 통항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
- ▶ EU는 러시아의 외국 군함 사전 승인 제도 등 NSR 통제 강화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북극 거버넌스가 UNCLOS에 기반한 국제법 질서와 항행의 자유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
- ▶ 러시아는 NSR 통제가 UNCLOS 제234조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2020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제조약 및 국제기구 결정이 러시아 헌법에 반할 경우 국내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을 명문화하며 관련 통제 논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 [러시아 북동항로 지역]



자료: Lawfare

## 3. 러시아 NSR의 경제성

### ■ 러시아는 2022년 「2035년까지 북동항로 개발 계획」을 승인하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핵심 물류축으로 NSR 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 ▶ 러시아는 북극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 국가안보 및 국익 보호를 위해 북극 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NSR 개발 계획을 추진
- ▶ 동 계획은 152개 과제와 약 1조 8천억 루블(약 32조원) 규모의 투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화물 기반 구축, 교통 인프라 개발, 화물선·쇄빙선 확충, 항해안전 강화, 항해 관리·발전 등을 중심으로 NSR 운송 역량 확대를 추진
  - 러시아 정부는 동 계획을 통해 북극항로 화물 물동량이 2024년 8천만 톤, 2030년 1억 5천만 톤, 2035년 2억 2천만 톤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 북극 해역의 자연환경 및 인프라 제약으로 인한 높은 운항 비용과 항행 불확실성은 NSR 경제성의 핵심 제약요인으로 지적

- ▶ 북극항로 운항 선박은 대빙등급(ice-class)·쇄빙선 에스코트·빙상 도선사 승선 등이 요구되며, 일반 항로 대비 보험료 및 운영 비용이 높은 수준

- 특히 북극 해역은 극한 기상환경, 해빙 충돌 위험, 제한된 구조 인프라 등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 보험료가 높게 책정
- 일부 연구에서는 일반 항로 대비 약 40% 수준의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는 것으로 분석
- ▶ 또한, 계절별 결빙 상황에 따른 항행 불확실성, 쇄빙선 지원 의존, 제한된 항만 인프라 등으로 인해 정시성 확보에도 제약이 존재

**■ NSR은 흘수(draft)·선폭(beam) 제한 등으로 인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중심의 글로벌 해상 물류 체계에 적용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나, LNG·원유 등 액체 벌크 화물 운송에서는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

- ▶ 산니코프 해협 등 NSR 일부 핵심 구간은 수심 약 13m 수준으로 선박 흘수(12.5m)와 선폭(약 30m)에 제약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통항 가능한 선박 규모도 약 5만 DWT(약 4,250TEU) 수준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평가
  - 현재 글로벌 컨테이너 해운시장은 1만~2만4천 TEU급 대형·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NSR은 흘수·선폭 제약으로 인해 이러한 선박의 안정적 운항을 수용하기 어려워 규모의 경제 확보에 한계가 존재
- ▶ 반면 NSR은 컨테이너 화물보다 원유·LNG 등 에너지 화물 운송에 보다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며, 연구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북극항로는 주로 원자재 운송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
  - ※ 상하이-로테르담 구간 수에즈 운하와 NSR 화물 운송 기준
  - 특히 액체 벌크 화물(원유·디젤·메탄올·LNG)의 경우 항행거리 단축에 따른 운항비 절감 효과로 수에즈 항로 대비 최대 45~50% 수준의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며, 건식 벌크 화물 역시 쇄빙선 호위 없이 운항 가능한 경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
  - 화물 유형별 운송비 비교 결과, 탱커의 경우 배럴당 운송비가 북동항로(1.58달러)에서 수에즈 운하(2.61달러)보다 약 40% 낮게 나타난 반면, 컨테이너 화물은 TEU당 운송비가 북동항로(277.73달러)에서 수에즈 운하(197.61달러)보다 높게 나타나 경제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

**[상하이-로테르담 구간 수에즈 운하와 북동항로(NSR)의 화물 유형별 운송비 비교(쇄빙선 호위 포함)]**

	탱커(배럴당)	벌크선(1톤당)	컨테이너(TEU당)
수에즈 운하	2.61달러	12.49달러	197.61달러
북동항로	1.58달러	12.22달러	277.73달러

자료: Coface.(2026.04.20.). p. 6.

## 4. 함의 및 시사점

### ■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상업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NSR에 대한 관심이 증가

- ▶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 해빙 감소로 북동항로 이용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북극 개발 정책을 바탕으로 NSR 통과 운항 횟수 및 화물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상업적 북극항로 이용이 현실화되고 있음
- ▶ 특히 북동항로는 기존 수에즈 운하 경유 항로 대비 운송 거리 단축 효과를 제공할 뿐 아니라, 홍해 사태 및 호르무즈 해협 위기 등 주요 해상교통로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는 공급망 다변화 수단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부각

### ■ 러시아의 제도적 NSR 통제 체제 구축과 북극 해역 특유의 지리적·환경적 제약은 NSR 활용 확대의 주요 제약요인으로 작용

- ▶ 러시아는 UNCLOS 제234조를 근거로 통항 허가, 도선 의무, 쇄빙선 지원, 군함 사전 승인 제도 등을 운영하며 NSR에 대한 관리·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NSR은 향후 러시아의 전략적 영향력이 집중되는 해상 초크포인트(chokepoint)로 기능할 가능성도 존재
- ▶ 또한 높은 보험료와 쇄빙선 의존, 계절적 결빙에 따른 항행 불확실성, 제한된 항만·구조 인프라 등은 NSR의 안정적 상업 운항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 ▶ NSR은 흘수·선폭 제한으로 인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중심의 글로벌 해운산업이 요구하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상대적인 경제성 또한 LNG·원유 등 액체 벌크 화물 운송 분야에 국한되는 것으로 평가

### ■ 러시아의 법·제도 변화, 국제 제재 환경, 북극 거버넌스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제안보적 관점에서의 NSR 접근 필요

- ▶ NSR은 지리적·제도적 제약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기존 글로벌 해상 운송망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주요 병목구간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차원의 전략적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
- ▶ NSR은 러시아의 북극 인프라 투자, 국제 제재 환경, 북극 거버넌스 및 통항권 관련 국제 규범 변화 등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이 러시아와의 NSR 협력 전략 수립 시 이러한 변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

### 참고문헌

- Center for High North Logistics. (2026.12.09.). Main Results of NSR Transit Navigation in 2025.
- ChinaDaily. (2012.09.27.). Icebreaker Xuelong concludes Arctic expedition.
- Coface. (2026.04.20.). Will Arctic shipping routes really reshape the map of global trade?
- European Parliament. (2025.11.12.). REPORT on a European Parliament recommendation to the Council, the Commission and the Vice-President of the Commission / 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on the EU's diplomatic strategy and geopolitical cooperation in the Arctic.
- Insurance Asia. (2026.04.22.). High insurance costs limit Arctic shipping to niche cargo.
- Lawfare. (2022.10.17.). Wrangling Warships: Russia's Proposed Law on Northern Sea Route Navigation.
- MFA Russia. (2025.09.24.). Definition and legal status of the Northern Sea Route (For reference).
- Radiotech. (2025.10.29.). International voyages on the Northwest Passage in 2025.
- Reuters. (2020.11.27.). Insight: Arctic headache for ship insurers as routes open up.
- Scott Polar Research Institute. (2025.11.01.). Transits 2025.
- The Arctic Institute. (2011.09.15.). The Future of the Northern Sea Route - A "Golden Waterway" or a Niche Trade Route.
- U.S. Department of Defense. 2024 Arctic Strategy.
- UN Trade and Development.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2024.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8 сентября 2020 г.).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1487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равил плавания в акватории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 августа 2022 г.).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2115-р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лана развития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на период до 2035 года».
-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31 июля 1998 г.).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 155-ФЗ «О внутренних морских водах,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м море и прилежаще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27 декабря 2018 г.).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 525-ФЗ «О внесении 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28 июня 2022 г.).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 194-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статью 14.2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внутренних морских водах,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м море и прилежаще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Кодекс торгового морепла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30 апреля 1999 г.). Кодекс торгового морепла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81-ФЗ.

### 저자 소개

정선미 | [sumjung26@mofa.go.kr](mailto:sumjung26@mofa.go.kr)

경제안보외교센터 선임전문관으로 재직중이다. 관심 주제는 러시아·중앙아시아 정치경제, 에너지 공급망·해상물류, 대러 제재, 유라시아 지정학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국가 주권의 정치적 도구화 : 러시아의 헌법개정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소연구』 제49권 제1호(2025),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 중국의 에너지 협력에 미친 영향” 『슬라브학보』 제39권 제1호(2024), “튀르크 집단 정체성의 형성과 OTS: 구성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63권 제2호(2023) 등이 있다.

# EU-중국 무역·경제안보 갈등 심화 동향과 함의

임산호 선임전문관

## 요약

- ▶ EU는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 중국의 희토류·핵심광물 수출통제, 넥스페리아 사태 등을 계기로 대중국 경제안보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5월 29일 집행위원 회의에서 EU-중국 무역·투자관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을 공식화
- ▶ 이에 따라 2026년 하반기에 EU에서 기존 무역방어조치 강화와 신규 경제안보 수단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회원국 간 이해관계 조정과 긴 입법 절차로 인해 강경한 정치적 메시지와 실제 정책 집행 간 괴리가 지속될 가능성
- ▶ EU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에서 신뢰할 수 있는 대체 공급망 확보가 필수라는 점에서, 우리 기업은 반도체, 배터리, 첨단소재, 핵심부품 등 경쟁우위 보유 분야를 중심으로 유럽의 전략적 공급망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필요

## 1. 최근 EU-중국 관계 동향

- ▶ 2026년 5월 29일 유럽 집행위원회는 전체 집행위원들을 대상으로 집행위원 회의를 개최해 대중국 무역방어 패키지를 논의했으며, 회의 결과 EU-중국 무역·투자관계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공개
  - 이후 중국 상무부는 2026년 5월 30일 공식 성명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양측 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
  - 중국은 올해 3월 공개된 EU의 산업가속화법(IAA) 초안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이 보호주의를 조정한다고 주장하며 즉각 반발했으며, 4월에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EU의 경제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오고 있는 상황
- ▶ EU는 기본적으로 디리스팅 기조를 유지하면서 무역방어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나, 관련해 중국은 EU의 디리스팅 등 용어는 보호무역주의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비판(5.28, 외교부 대변인)
- ▶ G7 정상회의(6월 15일) 및 EU 정상회의(6월 18~19일)에서 주요 의제인 글로벌 경제 불균형 문제에 이러한 EU의 입장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하반기 EU 집행위의 후속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만큼 최근 갈등의 배경과 향후 전망을 검토

## 2. EU의 대중국 경제안보 대응 강화 배경과 주요 논의 사안

### ■ 최근 EU-중국 관계 악화 배경에는 2025~2026년 EU의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 중국의 희토류·핵심광물 수출통제, 그리고 넥스페리아 사태를 통해 드러난 공급망 무기화 가능성에 대한 경계 확대 등이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

- ▶ 2026년 1분기 EU의 대중국 상품무역 적자는 약 980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51% 급등했으며, 코로나19 이후 최고치 기록(Eurostat)

※ 중국 해관총서 기준 2026년 1분기 중국의 대EU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급증했는데 이는 2024년 EU의 전기차 관세 부과 이후 둔화되었던 수출이 반등한 것으로 분석되며, 미국향 수출이 16% 감소한 것과 극명히 대비

-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철강, 화학제품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지속되면서 유럽 시장 내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 확대에 대한 우려가 확산
- 업계에서는 유럽 현지 제품 대비 최대 40% 저렴하게 공급되는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 차이를 지적하며, 유럽 내 대중국 무역의 규제 공감대가 역대 최고조
- 특히 일부 유럽 싱크탱크와 산업계에서는 최근 첨단 제조업 분야 중국의 공급과잉이 유럽 시장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새로운 형태의 ‘China Shock 2.0’으로 평가하며 대응 필요성을 제기

- ▶ 2025년 하반기 발생한 넥스페리아 사태는 유럽이 코로나19 이후 다시 한번 반도체 공급망 충격 가능성을 경험한 사례로 평가되며, 중국계 기업의 전략산업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

※ 네덜란드 정부는 중국 윈텍(Wingtech) 산하 넥스페리아에 국가안보 및 공급망 안정성 우려를 이유로 경영 개입 조치(25.9.30.)를 취했으며, 이후 중국이 일부 반도체·부품 공급을 제한하며 글로벌 반도체·자동차 공급망에 혼란 발생 (경제안보 Review 25-22)

- 넥스페리아 사태는 특정 기업 또는 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이 경제안보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EU 내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심사 및 공급망 관리 필요성을 재차 부각
- ▶ 최근 EU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심사와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적극 활용하여 중국 기업의 전략산업 투자 및 인수합병(M&A)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

※ 2025.7월 발표된 중국 JD.com의 CECONOMY(유럽 최대 가전 유통체인 MediaMarkt·Saturn 모회사) 인수 거래는 독일 연방카르텔청의 승인 외에도 독일 투자심사와 EU 역외보조금규정(FSR) 심사 대상이 되었으며, 집행위는 중국 정부 보조금에 따른 시장왜곡 여부를 조사 중

### ■ 이에 유럽에서는 기존 무역방어수단의 강화와 구조적 공급망 재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일부 회원국과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한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

- ▶ EU의 산업전략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 스테판 세주르네 부위원장은 수입 관세·수입 쿼터 등 기존 무역방어수단을 특정 기업이나 품목이 아닌 산업 전반에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 (5.28. FT 인터뷰 및 5.29 집행위 회의 이후 보도자료 등)
  - 화학, 금속,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를 우선 적용 대상으로 언급했으며, 실질적으로는 해당 분야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중국 기업들을 겨냥한 조치로 평가
  - 특히 현행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방어조치는 통상 수개월의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나, 중국산 저가 수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조사 완료 이전에 산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 신속화 필요성을 강조
  - 한편, 집행위원회 내부에서도 산업·통상 분야를 담당하는 세주르네 부위원장과 셰프초비치 통상담당 집행위원 등이 강경한 입장인 반면, 일부 집행위원들은 신중론을 제기하는 등 온도차가 존재
- ▶ 위와 같은 집행위원회의 논의와 별도로 유럽 5개국(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리투아니아)은 집행위원단의 대중국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무역방어제도 강화를 촉구하는 비공식 의견서(non-paper)를 제출(5.26)
  - 동 국가들은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응하기 위해 세이프가드의 적극적 활용, 신규 공급망 회복력 수단 도입 등을 촉구
  - 반면 독일은 최근 대중 경계론이 확대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동 의견서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스페인 역시 언론 보도 이후 해당 문건이 공식 정책 입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일부 회원국에서는 중국과의 마찰 확대를 우려하는 모습도 관찰
    - \* 스페인 경제장관 카를로스 쿠에르포는 동 의견서에 대해 기술적인 차원에서만 논의된 것이며 정치적인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라고 발언(5.28, Politico)
  - 이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대중 강경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서도 회원국 간 이해관계 차이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며, 향후 EU 차원의 정책 결정 속도와 강도를 제약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
- ▶ 철강 분야에서는 이미 세이프가드 제도 강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EU는 기존 조치 종료(6.30)를 앞두고 새로운 보호조치를 마련 중
  - 무관세 수입쿼터(TRQ)를 대폭 축소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이 합의되었으며, 중국발 공급과잉에 대한 방어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
  - 또한 melt & pour 원산지 규정을 도입하여 제3국을 경유한 중국산 철강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
- ▶ 별도로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IAA)의 입법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 무역법 제301조와 유사한 관세수단이나 공급망 다변화 의무화 등 신규 정책 수단에 대한 논의도 확산

- 산업가속화법은 배터리, 태양광, 전기차, 핵심원자재 등 전략산업의 역내 생산 확대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연내 입법을 추진 중(경제안보 Review 26-5호 참조)
- 프랑스를 중심으로 EU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무역 대응수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싱크탱크와 언론에서는 미국의 301조와 유사한 방식의 조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논의가 증가(Atlantic Council, Centre for European Reform 등)
- 또한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제한하기 위해 핵심 품목의 조달선을 최소 2~3개국 이상으로 다변화하고, 단일 국가 또는 공급업체 비중을 일정 수준 이하(30~40%)로 제한하는 공급망 다변화 의무화 방안도 정책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FT, Politico 등)

### 3. 관련 함의

#### ■ (EU-중국 관계) EU 차원의 대중국 정책은 강경한 조치와 제한이 확대되는 한편으로, 이행 과정에서는 회원국별 이해관계에 따라 속도와 강도가 조정되는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

- ▶ EU의 정책결정 과정은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입법 또는 정책 시행 이전 단계부터 관련 논의가 공개되며 중국과의 외교적·통상적 마찰이 선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
  - 집행위원회 논의 및 입법 과정 등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면서 실제 조치가 도입되기 전부터 중국 측의 비판과 대응을 유발
  - 반면,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회원국 간 이해관계 조정, 산업계 의견수렴, 법적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며 당초 논의보다 완화된 형태로 도입되거나 시행 시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
  - EU 집행위원회가 중국과의 무역·투자 관계에 대해 사실상 체제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음에도(5.29), 실제 정책은 회원국 간 이해관계 조정과 입법 절차 과정에서 상당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 강경한 정치적 메시지와 실제 정책 집행 간 괴리가 지속될 전망
- ▶ 집행위원회 차원에서는 경제안보 및 산업보호를 강조하는 강경한 메시지가 확대되고 있으나, 회원국 차원에서는 여전히 중국과의 경제협력 유지 필요성을 고려하는 이중적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
  - \* 프랑스, 리투아니아 등을 중심으로 대중국 경계론이 강화되는 반면, 독일, 스페인, 헝가리 등 회원국은 자국 기업의 중국 시장 의존도와 투자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을 선호
  - 특히 전기차, 배터리, 화학, 기계장비 등 주요 산업에서 중국의 경쟁우위로 인해 회원국들은 경제안보 강화와 산업협력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

#### ■ (한국에의 함의) 신뢰할 수 있는 대체 공급망 파트너로서의 전략적 포지셔닝이 필요하며, 동시에 중국발 통상 견제 리스크 대비를 동시에 모색

- ▶ EU의 경제안보 강화 선언에도 불구하고 대체 공급망 부재는 EU 내에서 상당 기간 정책 집행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최근 EU는 러시아 지원 혐의로 중국 반도체 기업 양제전자를 제재 대상에 포함했으나, 유럽 자동차업계의 대체 공급망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9개월 한시적 거래 면제를 검토하면서 **경제안보 정책과 공급망 현실 간의 충돌을 보여줌**
  - \* EU는 2026년 4월 제20차 對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통해 중국 반도체 기업인 양저우 양제전자기술(Yangzhou Yangjie Electronic Technology)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동 기업은 러시아에 200건 이상의 이중용도 품목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음. 그러나 유럽 자동차 산업이 Nexperia발 공급망 리스크 확대 이후 양제전자를 주요 대체 공급업체 가운데 하나로 활용해오면서 공급망 차질 우려가 재발
- 동 사례는 EU가 법적·정치적으로 경제안보 강화와 제재 확대를 선언하더라도 실제 공급망 구조가 이를 즉각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정책 이행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 향후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EU의 디리스팅 정책 역시 궁극적으로는 실질적인 대체 공급망 확보 여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전망
- ▶ EU가 추진하는 공급망 다변화는 단순한 중국 배제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대체 공급망 확보가 핵심 목적이라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은 반도체, 배터리, 첨단소재, 핵심부품 등 경쟁우위를 보유한 분야를 중심으로 유럽의 전략적 공급망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필요
  - 아울러 최근 IAA 등 입법 동향을 보면 EU의 공급망 재편 과정이 장기 공급계약, 공동투자, 현지 생산거점 구축 등 보다 구조적인 형태의 산업협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
- ▶ 중국이 EU의 디리스팅 정책을 보호무역주의로 규정하기 시작한 가운데, 향후 유사한 논리가 한국을 대상으로도 적용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최근 중국은 EU의 무역방어조치, 공급망 다변화 정책,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
  - 향후 우리나라 역시 공급망 안정화, 투자심사, 수출통제, 핵심기술 보호 등 경제안보 정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유사한 비판과 대응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
  - 이에 따라 경제안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제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외적 문제 제기에 대비한 정책 논리와 대응체계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

### 참고문헌

- Euractiv. (2026.5.28.). EU to bolster trade defence tools against China, Séjourné says.
- Euronews. (2026.5.29.). Is Europe finally waking up to China?
- Financial Times. (2026.5.29.). EU to broaden import quotas and tariffs against China.
- Politico. (2026.5.29.). Von der Leyen gears up for fight over China trade ties.
- Politico. (2026.5.30.). Beijing threatens retaliation over EU moves to curb China imports.
- Reuters. (2026.5.29.). European Commission vows tougher action on trade with China.
- South China Morning Post. (2026.5.31.). As EU mulls economic tools, China vows to take steps against any new trade restrictions.
- The Guardian. (2026.5.28.). EU to discuss potential restrictions on Chinese imports amid fears of overreliance
- The Wall Street Journal. (2026.5.30.). China Threatens to Launch Trade Probes Against the European Union.
- Centre for European Reform. (2026.5.28.). Europe's Door to Chinese Tech Investment Is Still Ajar. Insight. Centre for European Reform (CER).
- Lichfield, C., Mullaney, L. D., & Yin, J. (2026.5.28.). As China's Surpluses Become Unbearable, the EU Is Edging Toward Its Own Section 301. Atlantic Council, GeoEconomics Center.

### 저자 소개

임산호 | shlim22@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선임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며, 국제경제·국제거시 분야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규제 동향을 분석하고, 산업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분야 경제안보 이슈를 관찰·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가 한국의 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에 미친 영향 분석(무역학회지, 2024)”, “The Effects of Risk-Hedging Motives and Trade Costs on Foreign Bond Holdings(IEJ, 2025)” 등이 있으며, 주요 경제안보 Review 보고서로 「넥스페리아 사태의 경제안보적 시사점」(25-22호), 「중동전쟁 이후 중국의 에너지안보 전략과 한국에의 함의」(26-9호) 등이 있다.

# 중국 상무부 美 제재 이행 금지 명령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김단비 전문관

## 1. 주요 내용

### ■ (개요)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對이란 석유 거래 관련 제재 조치를 중국 내에서 차단하는 「상무부 공고 2026년 제21호(이하 금지령)」를 발표 및 시행(5.2)

- ▶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5월 1일 이란 석유 거래 참여를 이유로 중국 5개 정유기업을 미국의 특별 지정 제재 대상(SDN) 리스트에 포함하였으며, 중국 상무부는 이에 대응하여 익일인 5월 2일 해당 제재의 이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격 발표함.

- (이행 금지 대상 美 제재) 미국이 행정명령(E.O. 13902, E.O. 13846)에 의거하여 이란 석유 거래 참여를 이유로 중국 5개 기업에 취한 SDN 리스트 등재, 자산 동결 및 거래 금지 등 제재 조치

※ 제재 대상 5개 기업 : 헝리석화(다렌) 정유, 산둥 서우광 루칭석화, 산둥 진청석화, 허베이 신하이화공, 산둥 성심화공 등

### ■ (주요 내용) 제재 대상 기업에 부과된 미국의 자산 동결, 거래 금지 등 역외 제재 조치를 중국 영토 내에서 ▲인정(承认), ▲집행(执行), ▲준수(遵守)해서는 안 됨을 명시

- ▶ (법적 근거) 중국 국가안전법, 대외관계법, 반(反)외국제재법 및 그 시행 규정인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 저지 방법」(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에 기반함

- 본 조치는 2021년 1월 제정된 상무부령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 저지 방법 (이하 역외 적용 저지 방법)」 제7조(금지 명령)를 실제로 발동한 최초의 사례임

- ▶ (금지 명령 시행 관련 조항) 「역외 적용 저지 방법」 상 금지 명령(7조)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재 준수 주체(제3국 기업 포함)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허용(제9조) ▲정부 차원의 보상 및 지원 제도(제11조)를 명시함

- (손해배상 청구 허용) 외국의 부당한 제재 조치를 준수함으로써 중국 국민·법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당사자(제3국 기업 포함)를 상대로 중국 인민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능(제9조)

※ (예시) 특정 은행이 미국의 제재에 따라 중국기업의 신용장 지급 거부시, 해당 은행이 중국 내(베이징, 상하이 등) 지점을 보유하고 있거나 중국 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국 기업은 중국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정부 차원의 지원 제도) 국가의 금지령을 이행(미국의 제재 조치를 불이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중국 기업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중국 정부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필요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제공(제11조)

## [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 저지 방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법안 개요	외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보복 심사 기준 및 피해 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방법 규정
적용 대상 (제2조)	외국의 법률이나 조치가 국제법이나 국제관계 기본준칙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중국(법인, 조직)의 제3국과의 정상적인 경제교류를 금지할 경우 적용
주관 부문 (제4조)	상무부가 외국 정부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에 대응하고, 구체적인 실무는 상무부 및 발전개혁위원회의 유관부분이 담당
심사 요소 (제6조)	담당기관은 외국의 해당 법률·조치가 부당한 역외 적용에 해당하는지를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준칙 위반 여부 ▲중국의 국가주권, 국가안전, 발전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금지 명령 (제7조)	담당기관은 <u>외국의 해당 법률·조치가 부당한 역외 적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법률·조치를 인정·집행·준수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는 금지 명령 가능</u>
손해배상 청구 (제9조)	어떤 당사자가 <u>금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부당한 외국법률·조치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중국 국민, 법인, 기타조직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권익을 침해당한 자는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 당사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인민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u>
국가 지원 (제11조)	중국 국민, 법인, 기타조직이 <u>7조의 금지 명령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외국법률·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 유관 부처는 필요한 지원 가능</u>

## 2. 중국 내 평가

### ■ 미 제재에 대한 법치 기반의 정당방위 조치 강조 및 국제법적 정당성·주권 평등 원칙 부각

- ▶ (국제법적 원칙 복원)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금지령 발동이 미국의 불법적인 역외 제재 효력을 무력화함으로써, 국제법을 '주권 평등'이라는 근본 원칙으로 복귀시킨 정당한 조치라고 평가함 (商务部, 2026.5.2.)
  - 미국의 제재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불법적 조치임을 규정하고, 금번 금지명령은 자국 국민과 법인의 합법적 권익 수호를 위한 법치 기반의 정당방위적 대응임을 강조함
  - 유엔(UN) 헌장과 1996년 유럽연합(EU)의 유사 입법 사례를 인용하며, 본 금지령이 타당한 법적 근거와 국제 관행에 부합하는 정당한 조치임을 부각함
  - 대미 제재 남용을 방지할 경우 중국 전체 원유 수입의 11% 이상(일일 170만 배럴)을 차지하는 핵심 에너지 공급망 안정을 심각하게 교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조치 도입의 당위성 강조

### ■ 2021년 제정 이후 집행 사례가 없었던 「역외 적용 저지 방법」의 최초 집행을 통해, 제도적 도구가 실질적 시행 단계로 공식 전환된 것으로 평가

- ▶ (양방향 규제 체제로의 전환) 특히, 美 제재 동참 시 제3국 기업에 대해서도 중국 내 법적 배상 책임을 유발하는 '양방향 규제 체제'로 전환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观察者, 2026.5.6.)

- (중국 규칙 준수) 미국의 2차 제재를 두려워해 자발적으로 이탈하던 제3국 기업들이(은행·보험·해운 등)이 중국 내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향후 미국의 제재가 아닌 중국의 규칙을 준수해야 함을 공식적으로 명시함

### ■ 금지령을 우선 발동함으로써, 향후 사태 추이에 따라 제재 수위를 단계적으로 격상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레버리지)을 남겨둔 것으로 평가됨

- ▶ (추가 여지 확보) 금번 조치는 상위 법령이 아닌 ‘차단조치(상무부령)’에 따른 금지령을 우선 시행한 것으로, 향후 미국의 조치 확대 및 격상 등 사태 전개에 따라 ‘신뢰할 수 없는 기업목록(블랙리스트)’ 등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여지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海外网, 2026.5.7)

## 3. 미국 내 평가

### ■ 일부 외신을 중심으로 중국 상무부의 공식 발표와 중국 금융당국 간 내부 정책이 상충하고 있다는 정황이 보도됨

- ▶ 상무부가 5월 2일 대외적으로 차단 금지령을 공개 발표한 이후,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국유 대형 은행들을 대상으로 제재 대상 5개 정유사에 대한 '신규 위안화 대출 중단'을 구두지시한 것으로 알려짐(Bloomberg, 26.5.7)
  - 이는 대외적으로 이란에 대한 지지와 강력한 주권 수호 의지를 과시하는 것과 달리, 대내적으로는 자국 주요 은행들이 미국의 금융 제재망에 걸려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서 퇴출당하는 치명상을 방지하려는 교육지책으로 분석됨
  - 금융 당국이 금융 시스템 보호를 위해 이와 같은 비공식 지침을 동시에 내림에 따라, 실제 美 제재 타깃이 된 5개 정유 기업들은 정부의 법률적 지원 선언과 금융권의 자발적 거래 기피 사이의 간극 속에서 실질적인 지원 공백을 겪게 되었다는 평가가 상존함

### ■ 법조계와 언론은 법에 기반한 실질 조치가 발표됨에 따라, 이론적 긴장에 머물던 외교 갈등이 다국적 기업들의 실제적인 법률 충돌 문제로 현실화되었다고 평가

- ▶ (이중 규제 문제) 미국의 제재 이행을 이유로 거래를 중단하여 중국 기업에 손실을 입힐 경우, 중국 시민이나 단체가 중국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실질적 근거가 마련됨
  -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무역·해운사들이 양국 법령 사이에서 이중 규제 국면에 봉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
- ▶ (중국의 대응 변화) 금번 조치는 일회성 대응이 아니라 대중 경제 제재 체제에 대한 중국의 ‘전례 없는 전면적 반항’이자 향후 중측의 대응 조치가 고조될 신호탄으로 분석(Bloomberg, 26.5.4)
  - 특히,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에 대한 중국의 첫 공식 대응 조치로 향후 유사한 맞불 조치의 빈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

- 이는 미국의 제3국 행위자 압박 수단인 ‘세컨더리 제재(Secondary Sanctions)’를 정면 겨냥하여, 미국이 가하는 금융, 외교 수단의 구조적 압력을 약화시키는 법적 방패로 기능하겠다는 의도로 평가됨
- ▶ (중국 조치의 한계) 다만, 미국의 달러화 청산 시스템, 글로벌 해운 및 보험 서비스 등 글로벌 banking 네트워크에 대한 미국 측의 통제력이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중국의 법적 조치만으로 미국 제재를 완전히 무력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됨(He Caiping, 26.5.)
- (비즈니스 환경 변화) 결과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은 전면적인 거래 중단보다는 제재 조항을 세분화하여 대응하거나, 대미 노출 사업부와 대중 노출 사업부를 선제적으로 분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이 더욱 파편화되고 법적 긴장도가 높은 ‘회색 지대(Grey Zone)’가 양산될 것으로 전망됨
- (위안화 결제망 우회 가속화) 반면, 미 금융 시스템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 민간 소형 정유사(Teapot)들의 특성을 활용하여, 위안화 결제 시스템(CIPS) 확대를 통한 미 당국의 추적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

## 4. 시사점

### ■ 중국 대외 대응 조치들의 구체적인 이행 방향 및 집행 경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 (금지령의 실질 집행 주시) 이번 금령 발표는 추가적인 세부 사항이나 구체적인 시행 가이드라인이 명시되지 않은바, 향후 본 금지령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강제될지는 실제 집행 및 준수 과정 추이에 따라 결정될 전망
- ▶ (중국의 경제·무역 법제화 강화 동향) 중국 정부는 최근 ▲대외무역법 개정 시행(3.1), ▲국무원 산업·공급망 안보에 관한 규정 시행(4.7), ▲외국의 부당 역외관할권 행사 대응 조례 시행(4.13) 등 해외의 경제·무역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며 정부 재량적 행위의 근거를 마련한바, 추세 및 집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

### ■ 이중 규제 준수 부담의 현실화 및 구조적 리스크 관리 필요

- ▶ (우리 기업에 대한 함의) 신규 제정된 각종 법령들의 적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규정 자체가 추상적인 만큼, 향후 실제 중국 당국이 법령 이행 및 집행 지침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립해 나갈지가 향후 우리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평가됨
  - (향후 우려) 현재 금지명령만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향후 우리 주력 분야 및 관련 공급망으로 유사한 금지령이 확대 발동될 경우, 우리 기업들은 미측 제재 규정과 중측의 금지 명령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중첩적 규제 국면에 직면하게 될 우려
- ▶ (구조적 리스크 관리) 중국의 대외 대응 조치가 실질적으로 집행된 사례임을 감안, 우리 기업들은 단기적인 법률 검토 수준을 넘어 공급망간 분리 운영, 핵심 소재·부품의 조달선 다변화 등 구조적인 공급망 복원력 확보 전략을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참고문헌

- Bloomberg(2026.5.4), China's unprecedented defiance of U.S. sanctions triggers showdown
- SQUIRE PATTON BOGGS(2026.5), China Issues Its First Blocking Order — Prohibiting the Implementation of OFAC Sanctions
- KING&WOOD(2026.5.2), China Issues Its First Blocking Order Against US Sanctions
- Foxnews(2026.5.7), China orders firms to ignore US Iran sanctions, daring US to enforce crackdown,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Economic Fury Ramps Up Pressure on Iran's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Oil Operations,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b0498>
- He Caiping(2026. 5), "The Compliance Trap:How China's Blocking Order Turns U.S. Sanctions Into a Legal Dilemma for Global Firms". SSRN Working Paper Series, SSRN Abstract 6722118.
- Stephenson Harwood(2026.5.5), China's first use of Blocking Rules against U.S. sanctions on Chinese refineries
- Bloomberg(2026.5.7), China Asks Banks to Pause New Loans to US-Sanctioned Refiner
- Bloomberg(2026.5.4), China's Rare Sanctions Pushback Leaves Banks Caught in Crossfire
- 国际金融报(2026.5.10.), 中国“阻断”美“长臂管辖”
- 商务部(2026.5.2.), 商务部新闻发言人就阻断美国对5家中国企业实施涉伊朗石油制裁措施答记者问
- 商务部(2026.5.2.), 商务部公告2026年第21号, 公布关于美国对5家中国企业实施涉伊朗石油制裁措施的阻断禁令
- 观察者(2026.5.6.), 顾嘉时：中国“阻断禁令”首次亮剑，美国长臂管辖遭反向制衡
- 海外网(2026.5.7), 中国强硬阻断美国制裁

### 저자 소개

김단비 | dbikim22@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첨단·신흥기술, 공급망, 미중기술경쟁이 있다. 주요 연구로는 “한국형 발전모델의 탐색과 성장동력 정책의 전환- 글로벌 경쟁 분석 및 국가 포지셔닝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9), “글로벌 분업체계 변화에 대응하는 R&D 전략의 전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20), “인공지능 기술 전망과 혁신 정책 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9)이 있다.

## EWS 공급망/에너지 관련 모니터링 결과

(기간: 2026.5.20.~2026.6.3.)

※ 외교부는 핵심품목들의 글로벌 공급망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EWS)을 운영 중이며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 별도 취합한 경제안보 관련 해외 동향을 종합하여 주요 동향 및 표로 정리

### ■ 러·중 정상회담(5.19~20, 베이징), 다극질서 구축과 전략적 협력 강화 재확인

- ▶ (주요 내용)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5.19~20.), 양국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에 달했다고 선언하며 다극질서 구축과 전략적 협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
  - 러·중 정상은 ▲포괄적 전략협조 및 다극질서 구축 공동성명 채택 ▲루블·위안화 기반 교역 확대 및 에너지 협력 강화('시베리아의 힘 2' 협의 지속 포함) ▲군사·전략협력 및 교육·인적교류 확대 ▲미국 일방주의 비판 ▲한반도·우크라이나 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 지지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 등에 합의
- ▶ (평가) 표면적으로는 러·중 전략협력 강화를 과시했으나, 실제로는 러시아의 대중 경제·기술 의존이 심화된 비대칭적 관계를 드러냈다고 평가
  - 특히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서방과의 무역 및 글로벌 공급망 안정도 함께 고려하는 실용적 접근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베리아의 힘 2' 협상에서도 가격 협상력을 바탕으로 우위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
  - \* 양국은 2025년 '시베리아의 힘 2' 사업 추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가격·공급조건·착공 일정 등에 대한 최종 합의는 도출되지 않음

출처: Kremlin(5.20.), 중국 외교부(5.20.), Reuters(5.20.), CNBC(5.21.), Aljazeera(5.20.) 등

### ■ 인도네시아, 핵심 원자재(팜유·석탄·니켈 등) 수출 국가통제 강화 추진

- ▶ (주요 내용)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팜유, 석탄, 니켈을 시작으로 모든 주요 원자재 수출을 국부펀드 다난타라(Danantara) 산하 국가 수출 법인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발표
  - 프라보워 대통령은 국회 연설(5.20)에서 세수 누수 차단, 가격 결정권 강화 등을 이유로 계약, 선적 등 모든 원자재 수출을 정부 설립 회사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발표
  -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이자 주요 석탄·니켈 공급국으로, 이번 조치가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과 가격 변동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 (평가) 금번 조치는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 국가 개입을 대폭 강화하는 사례로 평가되며, 시장 불확실성 확대와 인도네시아의 공급 안정성 저하 우려가 동시에 제기
  - 최근 루피아 약세와 재정 부담 확대 속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화 관리 및 자원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는 평가가 나오며, 자원보유국 중심의 자원민족주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

출처: Bloomberg(5.20.), 연합뉴스(5.20.), 한국경제신문(5.21.) 등

## ■ EU, 대중 전략 재검토 본격화 — 중국은 무역제한 조치에 보복 경고

- ▶ (주요 내용) EU 집행위원회가 5월 29일 대중국 전략 재검토를 위한 집행위원단 전략회의 (College Meeting)를 개최하고 무역방어·경제안보 수단 강화 가능성을 논의한 가운데, 중국은 대응 조치 가능성을 경고
  - EU는 회의 이후 요약문에서 “현재의 무역·투자 관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경제와 안보 이익이 긴밀히 연결됨에 따라 더욱 강력하고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발표
  - 중국 상무부는 “EU가 새로운 무역 제한 수단을 도입할 경우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
- ▶ (평가) EU의 대중 전략이 기존의 '디리스크'를 유지하면서도 보다 적극적인 산업보호·경제안보 기조로 전환되는 분수령에 진입했다는 평가이나, 실제 정책 집행 의지, 회원국 간 이해관계 차이, 중국의 보복 가능성 등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
  - EU는 6월 중순 G7 정상회의(프랑스)와 6월 18~19일 EU 정상회의에서 중국 과잉생산 문제와 경제안보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
  - 전문가들은 EU의 과제가 새로운 제도 도입이 아니라 이미 보유한 경제안보·무역방어 수단을 실제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의지 확보에 있다고 평가(Merics)

출처: FT(5.28.), Euronews(5.29.), Politico(5.29.~30.) 등

## ■ 미국-멕시코, 캐나다 제외한 USMCA 개정 양자협상 개시

- ▶ (주요 내용) 미국-멕시코가 USMCA 공동 검토를 앞두고 공식 양자 협상에 착수한 가운데, 미국은 멕시코산 자동차의 미국산 부품 기준 강화와 철강 원산지 요건 강화를 요구 / 캐나다는 협상 일정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태로, 협상 레버리지 약화 압박
  - 미측 핵심 요구는 ▲멕시코 생산 자동차에 미국산 부품 최소함량 기준 요구 ▲철강 원산지 조건 강화(USMCA 우대관세 적용 철강에 북미 용해·주조 요건 추가) ▲개정 USMCA에서도 일부 관세 유지 등으로 파악됨(USTR 그리어 대표 발언, 업계 인터뷰 등 참고)
- ▶ (평가) 이번 USMCA 재협상은 단순 무역협정 갱신을 넘어, 북미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지정학적 협상의 성격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
  - 철강 원산지 요건과 자동차 미국산 부품 비율 강화는 중국산 제품이 멕시코를 경유해 북미 시장에 진입하는 우회 경로를 차단하려는 의도 존재 / 멕시코가 미국과 먼저 합의에 도달할 경우, 캐나다의 협상 입지는 더욱 약화될 가능성
  - USMCA 원산지 기준이 강화될 경우,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둔 한국 자동차·부품·철강 관련 기업의 조달 구조와 대미 수출 전략에도 영향 예상

출처: Reuters(5.27.~5.28.), CBC(5.28.), 글로벌이코노믹(5.26.), 뉴시스(5.8.) 등

## ■ EWS 공급망

국가	일자	내용
중국	5.20.	[광물] 中 Li Qiang 총리,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실시조례> 공표
	5.20.	[정상회담] 중-러 정상회담 개최
	5.23.	[외국인투자] 中 내 누적 외자기업 수, 최근 3년간 매년 증가(신화사) : 현재 53만 개 / 누적 외국인 투자 규모 3조 6천억 달러 초과
	5.26.	[기술] 중국과학원, '중국 미래산업 과학기술 혁신 발전 보고서(2026)' 발표 : ▲범용지능 ▲피지컬지능 ▲양자정보 등 20개 분야 혁신 구상 서술
	5.27.	[원자재] 中 Li Qiang 총리, 저우산·닝보 시찰시 원자재·자원 배분 허브 구축 강조(신화사)
	6.1.	[투자] 中 국무원, 「대외투자규정」 발표 : (주요 내용) ▲중국 투자자의 대외투자 지원 및 권익 보호 ▲중국 투자자의 대외투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리스크 관리 강화 ▲투자 장벽 조사 및 대응 제도 도입 등
	6.2.	[금속] 연중 희소금속 가격 상승(증권일보) : 6.1일 기준 가격 상승폭(작년 말 대비) ▲탄탈럼 괴 157.69% ▲게르마늄 괴 83.82% ▲페로몰리브덴 35.65%
미국	5.20.	[관세] 美 CIT, 122조 관세 위법 판결 집행정지 신청 기각
	5.20.	[무역합의] 美-EU 무역합의 이행 협상 타결 : EU, 7.4. 시한 내 의회 승인 추진
	5.20.	[AI] 제1차 美-ASEAN AI 장관회의 개최
	5.21.	[관세] 美 Trump 대통령, 쇠고기 수입 관세 인하 행정명령 백지화(Politico)
	5.21.	[AI] 美 Trump 대통령, AI 사이버 보안 강화 행정명령 서명 보류(Reuters) : 對中 AI 경쟁 저해 우려
	5.22.	[반덤핑] 美 상무부, 한국산 모노머·올리고머 반덤핑 조사 최종 긍정판정 발표 : 한국 업체별 최종 덤핑마진 발표
	5.22.	[협정] 美-스웨덴, AI·반도체·양자 등 전략기술 협력 위한 「기술번영협정(TPD)」 양해각서 서명
	5.26.	[Quad] Quad 외교장관 회의 개최 : Quad 핵심광물 프레임워크 및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이니셔티브 발표
	5.26.	[관세] 美 Greer USTR, 122조 재부과 가능성 등 언급 : 기 부과된 122조 10% 관세의 법정 기한(150일) 만료 후 재부과 가능성 언급
	5.26.	[국가안보] 美 Gary Peters(D/MI) 상원의원 및 Susan Collins(R/ME) 상원의원, 232조 조사결과 공개 의무 강화 법안 발의
	5.26.	[관세] 中 보복관세로 25.3월-26.2월 美 농산물 對中 수출 149억불 감소(Inside US Trade) : ▲대두 ▲소고기 ▲면화 등 수출 감소
	5.26.	[핵심광물] 美-인도 핵심광물·희토류 공급망 프레임워크 서명
	5.26.	[핵심광물] 美-아르메니아 핵심광물·희토류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서명
5.26.	[반도체] 美 상원, 첨단 AI 반도체 對中 불법 유출 차단 법안 만장일치 통과(Inside US Trade)	
5.27.	[USMCA] 美 Greer USTR, USMCA 재검토 협상 개시 : 관세 유지 기조 재확인 및 對캐나다 갈등 지속 시사	

국가	일자	내용
미국	5.27.	[희토류] 美 정부 지원 희토류 기업 간 기술 탈취 소송 발생(FT) : 美 희토류 생산업체 MP Materials, 동종 경쟁사 USA Rare Earth 상대로 영구자석 핵심 기술 탈취 소송 제기(5.22)
	5.29.	[관세] 피터슨 국제연구소(PIIE), 301조 위법성 관련 기고문 게재 : 301조에 의한 포괄적인 관세부과도 법원에서 위법 판결될 가능성 제기
	5.31.	[반도체] 美 BIS, 「첨단 컴퓨팅 품목 수출 관련 허가 요건 안내」 발표 : 중국계 해외법인 대상 첨단 시칩 수출도 AI Diffusion Rule 적용 대상임을 명확화
	6.1.	[관세] 美 백악관,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파생상품 관세 일부 조정 발표 : 철강·알루미늄 제품 일부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일시 인하 등
	6.1.	[301조] 美 USTR,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결과 발표 : (조치안) ▲캐나다, 에콰도르, EU 등 14개국 대상 10% 관세 부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그 외 46개국 대상 12.5% 관세 부과
	6.2.	[AI] 美 백악관, AI 혁신 및 보안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 발표
일본	5.19.	[AI] 日 히타치, 美 엔트로픽과 AI 시스템 공동개발 방침 발표
	5.20.	[텅스텐] 미쓰비시메타리얼, 일본과 유럽에서 총 100억엔 규모 텅스텐 증산 투자 추진 발표 (닛케이)
	5.21.	[희토류] 중국 희토류 대일 수출 부진(닛케이) : 중희토류 수출 관련 수출 허가 지연 지속
	5.22.	[AI] 美 오픈AI, 日에 'GPT-5.5-사이버' 제공 검토(닛케이)
	5.22.	[AI] 日 금융대신, 정부·금융기관에 '미토스' 접근권 부여 표명
	5.22.	[자동차] 日 도요타자동차, 대만에서 일본 시장용 승용차 생산 시작(닛케이) : 10월부터 일본으로 수출 예정
	5.23.	[알루미늄] 중동정세 악화와 호르무즈 봉쇄로 일본의 3월 중동산 알루미늄 수입 전월 대비 13.1% 감소(요미우리) : 알루미늄 가격 약 16% 상승
	5.23.	[인프라] 세계 인프라 용자 100조엔 도달(닛케이) : 각국의 경제안보 정책에 따른 발전소·인프라 정비 수요 급증으로 인프라 및 자원 개발 관련 세계 용자액 2026.3월 처음으로 100조엔 규모 도달
	5.24.	[희토류] 日 경산대신,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희토류 수출규제 시정 요구(경산성)
	5.24.	[수소] 스미토모 등 참여 말레이시아 수소사업 중단(닛케이)
	5.26.	[증시] 닛케이지수 최초 65,000엔 돌파(닛케이) : 5.25일 닛케이지수 증가 6만 5,158엔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
	5.26.	[메르코수르] 日 정부,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EPA 협상 시작 방침(닛케이)
	5.26.	[Quad] 日·美·濠·印, 쿼드 외교장관회의 개최 : 해양안보, 에너지안보, 핵심광물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 분야 구체 협력 추진 확인
	5.26.	[경제안보] 日 정부, 연내 개정 예정인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3문서에 경제안보와 관련한 새로운 전략 개념으로서 '집단적 자율성' 확보 명시 추진(요미우리)
5.26.	[자동차] 日 도요타자동차, 해외생산 8만 3천대 감산 예정(닛케이)	

국가	일자	내용
일본	5.27.	[일미관계] 일미 정부, 전략적 투자 이니셔티브 관련 협의위원회 개최
	5.27.	[경제안보] 제1회 일-이탈리아 경제안보협의 개최
	5.27.	[텅스텐] 중국 텅스텐 대일수출 정체(교도통신) : 텅스텐의 일부 가공품의 대일본 수출이 2월 이후 정체
	5.27.	[AI] 日 후지쯔, 엔트로픽·오픈AI와 제휴 계획 발표
	5.28.	[나프타] 日 나프타 수입량 전년 동월 대비 47.0% 감소(교도통신) : 미국산 수입 대규모 증가
	5.28.	[정상회담] 일-필리핀 정상회담 개최
	5.29.	[투자] 日 외환법 개정안 성립 : 對日 투자 심사 엄격화, 일본판 CFIUS 창설 등 추진
	5.30.	[AI] 美 오픈AI, 日에 'GPT-5.5-사이버' 제공(닛케이)
	6.1.	[AI] 日 정부, 美 AI 국가전략 '제네시스 미션' 참여 방침(닛케이)
EU	5.20.	[관세] EU, 대미 관세인하 입법안 삼자협의 타결
	5.27.	[바이오] EU 집행위, 바이오테크법(안) 영향 분석 보고서 공개
	5.28.	[보조금] EU 집행위, 중국 기업 JD.com의 독일 기업 CECONOMY 인수 관련 역외보조금 규정 심층조사 개시
	5.29.	[무역] EU 5개 회원국(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EU 무역방어제도 (Trade Defence Instruments, TDI) 전반 개혁 촉구
대만	5.20.	[수출] 대만 4월 수출주문액 874.5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8.1% 증가(대만 경제부) : AI 수요가 정보통신·전자제품 주문 견인
	5.21.	[반도체] AMD, 대만 AI 반도체 생태계에 100억 달러 이상 투자 계획 발표 : 차세대 AI 인프라용 첨단패키징 제조역량 및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계획
	5.21.	[AI] 대만 행정원, 국가 AI 전략특별위원회 설립 추진
	5.28.	[관세] 美, 대만산 비반도체 232조 관세 우대 조치 공고 : 자동차부품, 목제가구 및 부품, 항공부품 등 3개 품목에 대해 5.1.부터 소급 적용
호주	5.21.	[희토류] 호주 정부, 아라퓨라社 희토류 개발 프로젝트를 핵심광물 전략비축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 발표 : 아라퓨라社, 동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FID) 발표
	5.21.	[투자] 호주 재무장관, 외국인 투자 심사제도 개편 발표
독일	5.20.	[첨단기술] 독일 연방연구부, 첨단기술 어젠다 이행을 위한 6대 분야(배터리·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기술·양자기술·핵융합)별 로드맵 발표
	5.26.	[독종관계] 獨 라이헤 경제에너지장관, 방중 계기 안정적 경제협력 및 투자 확대 강조
핀란드	5.25.	[암모니아] 핀란드, 친환경 암모니아 공장 건설을 통해 러시아산 암모니아 의존 탈피 추진(Yle) : 난탈리(Naantali) 암모니아 생산 공장 건설 추진 중
	5.25.	[관세] 핀란드 세관, 비EU발 저가 수입품에 3유로 관세 부과((Helsingin Sanomat) : 테무(Temu) 등 EU 외부의 유통업체를 통해 개인이 구매하는 물품이 주 대상

국가	일자	내용
핀란드	5.25.	[데이터센터] 핀란드 에너지 저장장치 기업 Data Tank AG, 핀란드 우타예르비(Utajarvi)에 대형 데이터센터 건설 예정(Helsingin Sanomat)
브라질	5.29.	[관세] 브라질 산업부, 브라질 철강협회의 관세 35% 인상 요청 기각
아르헨티나	5.26.	[투자] 아르헨티나 정부, 신규산업 대규모 투자촉진제도(Super RIGI) 법안 의회 제출
칠레	5.26.	[항만] 칠레 산안토니오 외항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승인 획득
베트남	5.29.	[301조] 美 USTR, 베트남 지재권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발표
인도	5.26.	[반덤핑] 인도, 미이행 반덤핑관세 부과시 연간 30억 달러 외화 유출 절감 가능(Business Standard)
	5.27.	[협정] 인도-캐나다, CPEA 협상 11월 타결 추진(Business Standard)
	6.1.	[무역합의] 美, 7.24. 이전 인도-미국 무역합의 체결 시 301조 추가관세 면제 가능성(Business Standard)
인도네시아	5.20.	[수출통제]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 원자재 수출통제 정책 발표 : 팜유, 석탄 등 원자재 수출 통제 정책 발표 / 2026.6.1.부터 시행

## ■ 에너지

국가	일자	내용
중국	6.1.	[전력] 中 5개 부처, 「非화석에너지 전력소비 산정 지침」 발표 : 非화석에너지 전력 사용량에 대한 통일된 산정 기준 마련 등
일본	5.22.	[원유] 日 관방장관, 산유국 공동비축유 보충분 일본 도착 발표
	5.25.	[원유] 이데미쓰흥산 대형 유조선 이데미쓰마루, 호르무즈 해협 통과 후 일본 도착 : 약 200만 배럴 원유 적재
	5.28.	[비축] 日-필리핀 정상회담 계기 ASEAN 공동 비축 관련 공동성명 발표
	5.28.	[에너지] 日 경산성, 제2차 AZEC* Leading Action Forum(5.25-28) 개최(경산성) : 에너지안보를 위한 각국 대응 및 중장기 에너지 공급 구조 강화 논의 * Asia Zero Emission Community
	5.29.	[원유] 3-5월 중동산 원유 출하량 48% 감소 예상(닛케이)
호주	5.25.	[가스] 호주 정부, 국내 가스유보제도 설계 초안 공개
인도	5.26.	[Quad] Quad,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이니셔티브 출범
필리핀	5.29.	[석유] 필리핀 에너지부(DOE), 일본 경제산업성(METI)과 석유비축시설 협력 발표
	5.29.	[원유] 필리핀, 이란産 원유 도입(로이터통신) : 중동 전쟁 이후 처음으로 이란산 원유 약 100만 배럴 도입
	5.30.	[LPG] 필리핀, 미국産 LPG 2.1만 MT(메트릭톤) 도입(PNOC)
	6.1.	[원유] 필리핀 에너지부 장관, 정부 주도 원유 비축 프로그램 추진 발표

# 「경제안보 Review」 2026년 발간 목록

발간호 (발간일)	구분	제목	저자명
26-1호 (2026.1.9)	분석	2025 미국 국가안보전략서 분석: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이재원
	분석	'EU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통신문' 주요 내용 및 분석	임산호
	현안	미국 국방수권법과 경제안보: 투자, 바이오, 조선, 공급망	최용호
26-2호 (2026.1.23)	분석	미국의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개입과 글로벌 에너지 질서 변화	유아름
	현안	한중 정상회담(1.5.) 계기 경제협력 주요 성과	안수린
		한일 정상회담(1.13.) 계기 경제협력 주요 성과	
현안	중국의 對일본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치 동향 및 시사점	김단비	
26-3호 (2026.2.6)	분석	미국발 AI 경쟁의 새로운 국면: 수출통제와 관세의 결합	이재원
	현안	미국의 기후·에너지 정책 변화와 글로벌 협력 구도 재편	황지현
	현안	중국 반도체 굴기 평가 및 업계 현황	안수린
26-4호 (2026.2.27)	분석	미국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판결 관련 쟁점 분석: 상호관세 위법, 대체 수단, 관세 환급, 무역 질서 영향	최용호
	현안	인도 AI 영향 정상회의(AI Impact Summit)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김수연
	현안	미국-EU 관계 냉각 속 유럽의 역지력 강화 동향	임산호
26-5호 (2026.3.13)	분석	미국 주도의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동향	황지현
	현안	호르무즈 해협 위기와 글로벌 에너지·경제안보 리스크	유아름
	현안	Made in Europe 규정 (EU 산업가속화법) 발표 및 영향	임산호
26-6호 (2026.3.27)	분석	중국 경제안보 법안 정비 동향 분석 및 시사점	김단비
	분석	양자내성암호(PQC) 전환 동향과 시사점	김수연
	현안	미국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동향	최용호
26-7호 (2026.4.10)	분석	중동 리스크 확대 속 한-주요국 석유제품 중심 공급망 구조 및 리스크 분석	김수연
	현안	에너지 안보 환경의 변화와 한미 원전 협력에 대한 함의	이재원
	현안	중동 사태에 따른 공급망(나프타·브롬·헬륨) 리스크(1)	안수린

발간호 (발간일)	구분	제목	저자명
26-8호 (2026.4.24)	분석	미국 의회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 강화 논의: MATCH 법안 분석	최용호
	현안	중동 사태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2): 요소·무수 암모니아·알루미늄 캐스팅 합금	안수린
	현안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동향 및 시사점	김단비
26-9호 (2026.5.15)	분석	중동전쟁 이후 중국의 에너지안보 전략과 한국에의 함의	임산호
	분석	미국·유럽 전략 기술 투자심사의 공통 과제와 시사점	이재원
	현안	글로벌 권역별 에너지 (원유·천연가스) 의존 및 수급 현황	유아름
26-10호 (2026.5.29)	분석	2026년 미중 정상회담 주요 내용	황지현
	분석	유가상한제와 러시아의 우회전략 평가	정선미
	현안	미국 국제무역법원의 122조 관세 위법 판결	최용호·박지연
26-11호 (2026.6.12)	분석	북극항로의 구조적 제약요인 분석: 러시아 북동항로(NSR)를 중심으로	정선미
	현안	EU-중국 무역·경제안보 갈등 심화 동향과 함의	임산호
	현안	중국 상무부 美 제재 이행 금지 명령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김단비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온라인 다운로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경제안보 Review - 메일링 서비스 신청

[cesfa@mofa.go.kr](mailto:cesfa@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CESFA,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는  
공급망, 첨단 기술, 전략 산업 등의 주요 경제안보 현안 대응에 필요한 정책 분석과  
국내외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Review는 격주로 발간되는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정기 발간물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정확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하여  
민관합동의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지의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